[1차 교육 자료집]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 네트워크 교육팀

목차

1. 여는 말 :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 1)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그리고 핵무기 참상의 산증인
- 2) 원폭이 해방의 상징이라고?
- (1) '군사적 필요' 주장에 대한 비판
- (2)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인한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

2. 한국 원폭피해자 현황

- 1) 원폭피해자의 정의
- 2) 한국 원폭피해자의 귀환과 정착
- (1) 한국 원폭피해자의 귀환
- (2) 한국 원폭피해자의 정착
- 3)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연구
- 4) 현 특별법의 문제점

3. 대물림되는 고통, 한국 원폭피해자

- 1) 원폭 피해 후유증의 유전성에 대한 논란
- 2) 국내/외 원폭 피해 후유증 관련 조사 및 연구 결과
- 3) 실태조사와 원폭 피해 유전 여부 검증의 필요성

4.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에 나서며

5. 관련자료

- 1) 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평가회의 관련 자료
- 2) 2005년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3)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문

6. 참고문헌, 사이트

1. 여는 말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일본이 인류역사상 유일하게 원자폭탄이 투하된 나라라는 사실을 모 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1945년 8월,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 에 의해 33개 나라의 국민이 죽거나 피폭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은 얼마나 될까? 또 그중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 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 을까?

어떤 역사 교과서가 말하기를 역사는 공간, 시간, 사람으로 구성된 다고 한다. 이 말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읽 고 싶다. 공간과 시간, 특히 그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사람'이 배 제된 역사는 있을 수 없다고.

7만 ~ 10만 명이 피폭되고 약 5만여 명이 사망(일본 경보국 내무성



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한국 원폭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사회 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 이 정부의 특별법 개정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 가고 있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원폭피해자'는 전 세대에 걸쳐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 그리고 반인륜적인 핵 무기의 참상을 온몸으로 증명하 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 런데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과 미국의 사죄는커녕 우리 정부조차도 이 '역사'를 인정하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21일 오전 서울 종 **않고 있으며 '한국 원폭피해자'는** 다. 공간과 시간은 있는데 '사람'

이 없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역

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뒤덮었던 '핵전쟁 위협'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갈 수 있을지 가늠할 시금석 같은 해이기도 하다. 이 호기를 발판삼아 우리는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에 나서고자 한다.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조사, 인정, 사죄, 그리고 배상이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듦으로써 '사람'이 빠진 역사에 '사람'을 채우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고자 한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함께 정리한 이 자료들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1)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그리고 핵무기 참상의 산증인

충청남도 서천에 살던 이천구 씨는 17살 때인 1942년 일본 후쿠오카현 아하타 제철소에 끌려갔다. 어느 날 면사무소 호적계 직원과 순사(경찰)가 찾아왔다. "면서기가 '너 이제 징용에 징발됐다'고 말하더라고. 뭐, 도 망가면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별수 없거든. 그 당시에는." 그는 어쩔수 없이 끌려갔다. 암모니아 비료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했는데, 식사는밥 약간과 미소시루(일본식 된장국)반 공기, 단무지 2쪽, 콩조림 1~2개가 전부였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던 그는 1943년 제철소를 탈출해 와카마쓰에 있던 철물 공장 이마무라 제작소에서 잡부로 일했다. 일본이 폐전한 뒤인 1945년 9월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갔지만, 배표를 구할 수 없었다. 시모노세키에는 수많은 조선인이 몰려들었고, 하루에도 몇십 명이 전염병 등으로 죽어 나갔다. 그는 주검 치우는 일을 하면 배표를 빨리 준다는 말에 열흘간 주검 치우는 일을 하고 배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언론이 정리한 구술 기록집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될 뻔했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발 간)의 일부를 따온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침략 전쟁을 벌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적, 물적 동원 및 자금 통제를 시행한다. 이른바 '강제동원'은 1937년 중일전쟁 즈음하여 전면화되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 물자 보급과 노동 력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동원이 필요하였던 일본은 중 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와 식민 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 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일으킨 일본이 조선인을 상대로 한 황 투입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국 신민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 권한을 위임한 전시 통제 기본법이다.



1930년대 이후 본격적인 침략 전쟁을 전한 국민정신 총동원 포스터

이에 근거해 다음 해 1939년 7월 7일에는 「국민 징용령」을 제정하여 강제징용의 토대 즉,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할 계획을 마련한다.

노무자는 1939년 7월부터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광업, 토건 현장 등으로, 1942년 2월부터는 '관(官)알선'이라는 이름으로 철강 관련 군 수공장 등으로 동원되었다. 1944년 9월에는 '징용'이라는 형태로 조 선인을 동원했다. 강제동원은 일본 본토 기업이 총독부에 할당 인원 을 시청하면 지역별로 인원을 차출해가는 이른바 '지역할당모집형 강 제동원'처럼 겉으로는 '모집'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극심한 일제의 수 탈과 일본인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징용에 불응하면 식량 배 급마저 끊어버리겠다는 협박 속에서 조선인들은 전시 동원 노무자가 되어 일본 각지의 탄광과 군수시설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일본에 간 대부분의 조선인은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지인의 권유였 든 경찰의 회유였든 사실상 '강제동원'된 것이다.

원폭투하 당시 한국 원폭피해자 사망자는 약 5만여 명(일본인 사망자 30만명. 한국인 사망자가 일본인의 1/6)으로 추정되는데 피폭자대비 사망자 비율이 일본인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대부분 '집단노동'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원폭이 해방의 상징이라고?

지난해 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티셔츠 사진이 SNS에 크게 회자된 적이 있다. 문제의 티셔츠는 한 국내 브랜드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옷으로, 뒷면에 '애국심', '우리 역사', '해방' 등 의 문구가 영문으로 새겨져 있고, 원자폭탄이 터지는 사진, 광복을 맞아 만세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란히 그려져 있 다. 이 티셔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본에서는 일본방송 출연 취소, 일본 극우단체의 혐한 여론 조성 등이 뒤따랐는데 이와는 별개 로 '해방'의 상징으로 인류의 비극인 '원폭 사진'을 쓰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1943년 일본 히로시마에 서 태어나 피폭 피해를 본 1세대 한국인 원폭피해자 심진태 한국원 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폭 사진은 광복 의 상징으로 적절치 않다"며 "원자폭탄 투하를 다룰 때는 당시의 실 제 참상, 74년 동안 이어진 피폭자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원폭피해자 2400여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이 여 전히 생존해있는 나라다. 어떻게 원폭이 '통쾌'한 일일 수 있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1945년 8월, 히로시마(6일)와 나가사키(9일)에 각각 투하된

원자폭탄은 수많은 인명피해, 방사능 피해와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을 가져온 '축복' 또는 '해방의 상징'처럼 언급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폭 '덕분에' 일본이 항복했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온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원폭 투하와 한국 원폭피해자 발생과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 '군사적 필요' 주장에 대한 비판

당시 원폭투하 결정을 내렸던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탄은 '일본의 전쟁능력을 파괴시키고', '전쟁의 고통을 단축'시키며, '수백만의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다. 즉 원폭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원폭투하가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인명구제', 식민지 해방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미국정부에 의해 처음 발표되어 1960년대까지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논의에서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입장 즉, 미국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원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현실에서는 하나의 입장표 명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국의 논리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은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에 대한 문 제 제기를 교묘히 차단하는 '방패막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원폭을 투하했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군사수석 보좌관이었던 리이(William Leahy)제독의 주장과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진술을 살펴보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 야만스런 무기의 사용은 대일전에 전혀 실

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일본은 이미 패배했고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리이 제독)

"일본은 이미 패배했고 원자탄 투하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내 믿음에 입 각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필요한 무 기를 사용함으로써 세계여론에 충격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불길한 우려를 이야기했다. 내가 보기에 일본은 바로 그 순 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항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아이젠하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

그런데 이런 견해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사실로 확인되었 다. 1946년 미전략폭격조사국(U. S. strategic Bombing Survey)은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모든 사실들에 대한 정밀

한 조사에 기초하여 볼 때 그리 고 생존한 일본 지도자들의 증언 에 의지하여 볼 때, 원자탄이 일 본에 투하되지 않았더라도, 소련 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일본침공이 계획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일본은 194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확 실히 그리고 1945년 11월 1일 이전에는 아마도 십중팔구 항복 ^{원폭투하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지점을} 트루먼 대통령과 핵심 정책입안 데 동의한다. (출처 : 연합뉴스)



설정하는 '투하지점 위원회'는 1945년 4월 원폭의 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하 지점을 "대규모 주 은 맥락에서 1945년 여름, 이미 거지역이 있는 직경 3마일 이상의 대도시'로 정하는

자들이 원폭투하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차 례 제기되었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물론, 전직 정책입안 자까지도 나가사키 원폭투하가 사실상 불필요했다는 데에 동의한 다.

원폭투하 이전부터 일본을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1945년 여름, 미 공군은 일본의 68개 도시를 폭격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도시 공격 군사작전이었다. 특히 8월 초부터 공격당한 도야마는 도시의 99.5%가 파괴되었다.

한편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당시 외무대신(위무 장관)이었던 토고 시게노리는 히로시마 폭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최고의회 소집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히로시마 폭격은 결정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8월 9일 '무조건 항복'을 논의하기에 이르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소련의 참전이었다. 8월 8일 자정,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선포하고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만주 지역, 사할린, 그리고 다른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공격은 일본에게 "150만이 넘는 병사에 의한 심각하고 저항하기 힘든 공격"이었고 일본에게서 "다른 실행 가능한 선택지들을 빼앗아가 버렸다". 소련의 선전포고와 침략은 전략적으로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8월 9일 이른 오후, 나가사키 폭격 소식이 도쿄에 전해졌을 때에는 이미 '무조건 항복'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회가 소집되어 있었다. 다시말해 나가사키 폭격은 항복을 고려한 요인이 아니었다.

이처럼 전후 상황과 맥락을 뛰어넘어 '종전'과 '인명구제'를 위해 원 자폭탄을 사용했다는 미국정부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 다.

(2)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인한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은 '의도된' 무차별살상 행위였다. 미국은 엄청 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 하했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 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반인도적 행위였다.

1945년 4월, 원폭을 투하할 장소를 정하기 위해 조직된 '투하지점

위원회(target committee)'는 원폭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지역이 있는 직경 3마일 이상의 대도시'를 투하지점으로 설정했다. 또 미전략폭격조사국도 공식 보고서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활기찬 인구 중심지이기 때문에 목표물로 선택되었다"라고 쓰고있다. 미국이 원폭투하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기 종전'과 '인명구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폭투하를 결정하게 된 실질적 요인은 무엇일까?

1970년대에 들어서 일부 기밀문서의 공개와 같이 새롭게 공개된 자료의 도움으로 미국이 '군사적 필요' 때문이 아닌 자국의 정치·외교적 구상 속에서 원폭투하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차츰 입증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원폭을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육군성 장관이었던 스팀슨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원자탄은 우리의 현 외교 문제와 연관이 있고 이 영역에서 나의 모든 생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맨해튼 계획(핵폭탄개발프로그램)의 책임자인 그로브즈(Groves)는 미국원자력 위원회 증언에서 "내가 이 계획을 책임진 약 2주일 후부터러시아가 우리의 적이고 원자탄 계획이 이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다는것 외에 나로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이미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이 종전 이후 세계질서에 대한 정치적 고려속에서, 다시 말해 '소련견제'라는 목적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할 두 가지 결정적 정황을 소개한다.

하나는 트루먼 대통령이 원폭실험 날짜에 맞추어 포츠담 회담 날짜를 정했다는 것이다. 연합국인 미국·영국·소련·중국(장제스는 중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불참)의 수뇌부가 모여 이미 점령한 독일의 처리와 패망이 확실해진 일제에 대한 처리문제를 다루기로 한 포츠담 회담은 원래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트루먼은 '예산문제'를 내세 우며 회담연기를 제안하는데 사실 회담연기의 진짜 목적은 원폭실험을 성공시키고 나서 회담을 하고자 함이었다. 왜냐하면 트루먼 대통

령은 원폭실험 성공이 자신이 회담장에서 동유럽의 자유선거나 동유 럽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문제를 더 힘 있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카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원자 폭탄 실험이 성사되고 포츠담 회담은 같은 달 26일에 개최된다. 포츠 담 회담이 끝나서 나서 트루먼 대통령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앞서 말한 앞뒤 상황이 더욱 명확해진다.

"스탈린(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 모르고 있지만 나는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하나 외에 또 하나의 에이스(원폭)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탈린 이 투페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패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 하나의 결정적 정황은 '원폭투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원래 미국 은 1945년 11월, 일본 쿠슈를 침공할 예정이었으며 소련은 1945년 2 월 얄타회담에서 조인된 합의에 따라 8월 초 일본에 선전포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이 종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또 원래 침공계획보다 3개월 이른 8월 6일과 8월 9일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것은 같은 시기에 참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였던 블랙 킷(P. M. S. Blackett)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포츠담 회담에 참가한 영국, 미국, 소련의 수 먼, 이오시프 스탈린)

"워폭투하는 2차 대전의 마지막 군 사적 행동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외교적 냉전 의 주요한 최초의 행동이었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의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목 적은 '종전'이나 '인명구제'와 같은 뇌부들 (왼쪽부터 클레멘트 애틀리, 해리 트루 고상한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전 이후 세계질서에 서 힘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대의 지향을 담고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핵무기 참상과 식민지배, 강제징용의 산증인인 한국 원폭피해자의 삶을 구술/채록하는 일은 미국과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폭투하의 책 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으며,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핵무기를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 약'이 발효를 앞두고 있듯이 무차별적인 대량살상과 대물림되는 피폭 피해, 참담한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인류의 지향과 궤를 같이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 엇보다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은 한반도에서 펼쳐졌던 핵대 결(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폭탄 투하 계획에서부터 미국의 대북선제 공격전략 유지와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를 청산하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평양공동선언)",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한반도(판문점 선언)"로 가는 길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2. 한국 워폭피해자 현황

1) 원폭피해자 정의

한국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폭피 해자(피폭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일본의 경우 원자폭탄 피폭 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하 '피폭자원호법')에 따르면 피폭자는 다음 4개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로 정의한다.

- 첫째 (1호 피폭자) 시내 또는 일정 인근 지역 내에서 직접 피폭 된 사람
- 둘째 (2호 피폭자) 2주 이내에 원호 활동, 의료 활동, 친족 찾기 등으로 히로시마 시내 혹은 나가사키 시내(폭심지에서 약 2km 구역 내)에 들어간 사람
- 셋째 (3호 피폭자) 기타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사체처리 및 구호종사자)
- **넷째** (4호 피폭자) 상기 피폭자의 태아

국내에서는 1994년 이후 원폭 직접 피폭자를 정의함에 일본 피폭자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기 4개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건강수첩 소지자 :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확인 절차를 거쳐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② **피폭시 상황확인증 소지자** : 건강 등의 문제로 일본을 방문할 수 없어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자에게 일본 정부가 발급한 피폭확인증을 교부받은 사람
- ③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인증자 : 1994년 이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로 등록한 후 일본정부로부터는 인증받지 못한 사람

이처럼 한국 원폭피해자의 규정은 '일본의 피폭자 정의에 규합하고,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피폭 자들이 일본 정부의 피폭자 수첩 인정이나 피폭확인증을 받아야 피폭 자로서 인정되는 현 상황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의 는 실제로 피폭당한 피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폭의 유전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있는 원폭 피해자 2, 3세에 대한 인정은 부정되고 있다.

2) 한국 원폭피해자의 귀환과 정착

(1) 한국 원폭피해자의 귀환

앞에서 한국 원폭피해자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원폭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귀환할 수 있었을까?



일본에서 제공하는 피폭자 건강수첩

원폭피해자들의 귀환 과정에서 일본이 나 한국 정부의 특별한 정책은 없었다. 일본 정부나 GHQ(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는 각종 수속이나 재산의 정리를 비롯해 귀환 시 선행되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연합군총사령부는 대일점령정책 일반에 있어서 세부적이고 신속하게 대 응조치를 취했지만 2백만 명에 달하는 재일한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재일한인의 귀환을 담당한 연합군 총사

령부가 재일한인의 귀환보다 우선시한 것은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이었다. 일본 정부는 재일한인의 귀환에 대하여 부산항까지 인솔자를 보낼 것, 토건노무자를 제일 먼저 귀환시키고, 석탄노무자를 최후로 보낼 것 등 귀환 방침을 내렸다. 대체로 귀환 한인들의 소요를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며, 석탄노무자를 가장 마지막으로 귀환시키라는 것은 전후 국가재건이 시작되면서 석탄의 수요

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45년 9월 2일 야마구치현(山口県) 센자키(仙崎)에서 출발한 고안마루(興安丸)가 부산으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재일한인들의 본격적인 귀환이 이루어졌다.

(2) 한국 원폭피해자의 정착

귀환 후의 문제점은 귀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많은 수의 귀환자들은 해방 직후 혼란한 한국의 사회 구조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안정된 생활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현대 사에서 원폭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고향에서 농사를 짓거나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공장 등의 일 자리를 얻은 경우에도 대부분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했으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가 극심한 실업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원폭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또한 원폭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이라는 이중의 고난을 겪었다.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은 귀환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여러 질병에 시달렸는데 원자폭탄과 방사능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 만큼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처방도 받을 수 없어 끊임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이들은 다시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원폭으로 인한 외상은 노동을 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원폭의 후유증 중 하나인 켈로이드화 된 피부 외상은 한센병(나 병)으로 의심되어 노동의 기회를 박탈하고, 거주의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심리적·정신적인 무기력증도 근면과 성실을 강조 한 당시 사회 분위기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고, 원폭피해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가장의 경제 능력이 가정 전체의 삶은 물론 자식들의 교육이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했다는 점에서 원폭 피해로 인해 뒤틀린 삶은 2, 3세대의 경제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건강과 생활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약 93%의 남성이 결혼했지만, 여성의 경우 64%만이 결혼을 하였고, 나머지는 이혼, 별거 등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6.6%만이 이혼이나 별거 상태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35.5%의 수치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의무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가문의 대를 잇는 출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결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열아홉에 마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열아홉에 시집을 갔는데 에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다가 못살겠어서 스물둘에 친정으로 와 버렸어. …… 아니, 원폭피해자 때문인 거는 아니고 애 못 낳는다고. 나는 다친 데는 없는데 애를 못 낳고, 내 바로 밑에 동생은 애는 낳는데 안 좋고 그렇다라고, 그 다음 동생도 첫 애가 뇌성마비고. 그리고 그 다음 동생들은 별로 다친 데가 없으니까 시집장가가도 그런대로 자식 낳고 지내요. 딸이병원에 갔다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의사가 집에 누가 갑상선 안 좋은누가 있냐 물었나봐. 그러니까 딸이 와서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유전이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이고, 정말속상해서 죽겠더라고.……결혼 할 때 내가 아무 말 안 했지. 우리 사위도모르다가 이제 알았어.……이야기 할 때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이야기를하나 걱정을 했는데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해를 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원폭피해자들의 생활실 태를 알 수 있다. 원폭피해자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으로 생계곤란(69.4%)을 선택했으며, 의료비(37.6%)가 뒤를 이었다. 복지 측면에서도 장애수당(39%), 건강수당(27%), 복지관 설립(15%) 순으로 희망하는 등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병에 잘 걸리는 문제 (67.2%), 회복이 어려운 신체장애의 문제(20.6%)와 더불어 출산과 자 녀들의 결혼 문제(31.1%)에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한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3~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40% 정도에서 원폭피해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목할 부분은 90% 이상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방사능의 영향에 의한 것보다는 약물로 어느 정도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관절염이나 위장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질병들이 어느 정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원폭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74년 합천군에서 실시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합천군에만 5,001명의 피폭자(사망자 1,134명 포함)가 거주하고 있었고, 197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실태조사 역시 합천군 거주 720명 등 총 1,070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합천지역에 상당히 많은 원폭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5년 인구통계에서 합천군의 인구가 156,827명인데 이 중에서 약 3%가 원폭피해자였던 셈이다. 실태조사가 모든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편 설문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수의 원폭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연구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룬 실태조사는 과연 전무할까? 정부 차원은 아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있

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90년 이전의 연구로 1세의 '피해'와 '피 폭자 운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시기다. 이어 두 번째 시기는 1990~2002년 김형률의 커밍아웃까지로 '보상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진 시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2002년~현재까 지로 '2세의 사회적 등장과 대물림' 논의가 활발해진 시기이다. 그런 데 이때 주의해서 볼 것은 1984년, 1991년, 2004년, 매 시기마다 실 태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와 사업이 '실태조사'에 근 거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할 만큼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가 무관심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먼저 첫 번째 시기 연구는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 '피 해'와 '피폭자 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 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 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일본 시민회가 1975~1979년 동안 진행한 실태조 사 및 연구와 구술집이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다. 한국전쟁과 분단,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에 따른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시민 사회의 역동이 있었다. 또한 1965년에 는 한일협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한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 사 보고서

자들은 사회적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협회를 결성하고, 피해 자들의 참상을 알리려 노력했다. 일본시민회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이를 도왔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원폭피해자의 실태 조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4년 8월에는 한국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전국 보건소와 도립병원 등을 통해 203명의 피폭자를 확인한 바 있고, 1965년 5월에는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히로시마현 지방본부가 25명을 파견해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실태조사와 의료구제를 요청했다. 이로써 한국에 사망자 8명을 포함해 462명의 피해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연구였으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역할만 했을 뿐, 포괄적인 통계를 내놓지 못했던 것으로보인다. 또한 1974년 4월, 외무부는 피폭자진료병원 설립을 위해 원폭피해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공지했고, 이렇게 파악된 인원이 4,976명이었다. 동년 전 원폭피해자원호협회 이사 겸 합천지부장이었던 장기장은 합천진료센터에 의뢰해 합천지역 피폭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는 사망자 1,134명을 포함한 피폭자 5,001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합천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1984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발간된 1975~1978년까지의 1차 실태조사는 서울, 경기, 부산, 합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1,070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원폭피해를 증언하고 있는 안월선 할머리 (출처 : 불교닷컴)

설문지를 3000명에게 발송했지만, 응답자는 1,070명에 불과했다. 실 태조사 보고서 서론에는 상당수의 피해자가 설문에 불응한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간의 실태조사가 피폭자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피폭'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민간에 의해 실시되었던 앞선 1964, 1965년, 1974년의 실태조사의 한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실태조사나 연구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였다. 한국 정부는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90~2002년 김형률의 커밍아웃까지이다. 1990년 한일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지원금의 사용처 및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연구는 기 존의 연구가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의 '필 요'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는 지원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원 폭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필요했다. 따라서 1990년 7월 보건사회부는 보건사회 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보건사회연구 원은 이듬해인 1991년 여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原爆被害者 實態 調査)』를 내놓는다. 이후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자 지원방법 및 그간의 협회 활동과 법정 투쟁 등의 연구가 등장했다.



있는 이치바 준코

주 연구로는 이치바 준코의「삼중 고를 겪어온 한국인 원폭 피해자 들」(1999, 역사비평사)를 들 수 있 다. 이치바 준코는 연구를 통해 한 국인 원폭피해자를 '식민 지배', '원 폭 피해', '방치'라는 삼중고를 받고 있는 '버린 자식' 같은 존재로 묘사 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아버지로, 국민을 자녀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식민지의 연장선상에서 피해 자들을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버린 자식'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연구하고 다루고 이라는 말을 통해 일본의 적자로 호명했던 조선인 피폭자들을 일본

정부가 외국인으로 처리함으로써,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아무런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녀는 일본시민회를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따라서 그녀의 연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과 이로 인한 필요, 가해 주체로서의 일본을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의 히로시마-20세기 백년의 분노,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누구인가』(역사비평사, 2003)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합천의 1세들의 도일이유를 밝히기 위해, 일본 자료와 합천의 옛 자료는 물론 당시 신문, 피해자 구술까지 꼼꼼히 검토해 일제시기 합천의 농민의 몰락과 도일을 설명해 내고 있다. 곧 '식민'으로 인해 '도일'이일어났고, 도일 지역에서 피폭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기는 2002년 3월 김형률의 '한국 원폭 2세 환우' 커밍아웃 이후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커밍아웃 이후 김형률은 최정식과 더불어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결성하게된다. 2002년 12월 부산에서는 '한국 원폭2세환우회를 지원하는 모임'이 조직되었고, 2003년 8월에는 한국원폭2세환우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진정을 결의하기 위해 8개 시민단체와함께 '한국원폭2세환우회' 및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되었다.



한국원폭피해자 2세 고 김형률씨 (한겨례21)

이어 공대위의 요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김형률의 타계 이후 2005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2012년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로 개칭)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안 활동 및 연구(증언, 유전성, 피폭1세의 법정 투쟁및 운동 및 법안 자료)가 진행되었다. 그 영향으로 2005년 민주노동당 조승수, 열리우리당 강기정 등 79명이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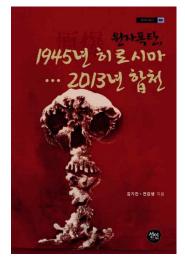
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5년 17대, 2008년 18대 국회에서 2세를 포함한 원폭피해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2011년 8월에는 '원폭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 일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곧 한일협정 제3조에 따라 피폭자와 일본 정부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피청구인, 한국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2011년 9월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평화박물관이 공동으로 '원폭피해자 및 그 자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및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일본 정부의사죄와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부응하듯이 2011년 12

월에는 '경상남도 원자폭탄 지원조례안', 2012년에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원폭피해자 2세 및 3세를 포함시키고 피해 자 지원 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기진·전갑생의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2013년 합천』이 있다. 이 연구는 원자폭탄 투하 배경으로부터 유전과 트라우마 문제, 원폭 실태조사와 제도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일본 현지 조사는 물론이고 방대한 협회 자료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 마...2013년 합천(도서출판선인)

와 구술자료를 살펴 피해의 발생과 피폭자 재판, 제도적 변화를 연대순으로 잘 정리했다. 또한 유전성 연구를 정리하고 트라우마의 전승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왜 방치되었는지 논의가 부족하고, 구술 등의 피해자 목소리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손종민(2005)은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을 비교·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백옥숙(2005)은 녹십자 서류를 중심으로 1990년 이후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 실태와 현황, 피해자 상황을 고찰하고 있다. 두 연구는 말미에 2, 3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앞선 시기의 연구를 통합하고 2, 3세로 연구 동향이 흘러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는데, 노무라 타이세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노무라 타이세이는 그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쥐'실험을 통해 방사능 피해의 유전적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그의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전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7년 일본정부는 "방사선영향연구소의 연구 결과 부모의 피폭으로 인해 자녀의 질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앞서 두 시기의 논의를 통합하고, 1세의 고통이유전적, 사회적 요건에 의해서 2세에게 대물림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진은 "원폭피해자, 특히 2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지나치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2세 문제는 의학을 넘어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 원폭피해자 연구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70년이 지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허광무는 원폭 피해자연구를 불모의 영역으로 만든 요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목했다. 원자폭탄이 '선의의 무기'로서 해방을 앞당

겼다는 국민 정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 원폭피해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절대 부족이 그것이다. 이를 잘 대변하는 것이 정확한 피해자 수가 아직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존하는 피해자, 그중에서도 2 세와 3세의 실태 및 그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불명확하다. 이는 과 거의 실태조사가 설문을 바탕으로 한 민간조사였다는 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역시 우편 설문조사방법으로 이루어 진 횡단연구였다는 점, 충분한 시일과 예산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 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 는 유전 문제는 충분한 시일과 예산을 두고 종단연구를 시행할 필요 가 있다.

4) 현 특별법의 문제점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외교적 보호조치나 중재회부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 행정 권력의 부작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원폭피해자들의 장애상태를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2002년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조례를, 2011년에는 경상남도가 2012년에는 합천군이원자폭탄피해자와 자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의 후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외에는 정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되었으나 대부분 발의에 그쳤으며 그나마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4225호, 2017년 5월 30일 시행)도 일본의법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에는 원폭피해자 2, 3세를 비롯한 후손들은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조항이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원폭피해자 후손들은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이나 지원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정신적·육체적 후유증과 피해의 대물림 받고 있다.

부모가 피폭되었다는 이유로 평생 사회적 편견과 유전 질환으로 살아가는 한국 원폭피해자 2, 3세 환우들의 고통은 어디에서도 치유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폭피해자 2, 3세 등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법안"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대상에 후손들이 포함되어 정부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책이 마련되고희생자들의 추모사업, 원폭피해 자료 교육관, 비핵평화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이 원폭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3. 대물림되는 고통, 한국 원폭피해자

1) 원폭 피해 후유증의 유전성에 대한 논란

원폭 피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원폭 피해 후유증의 유전성 여

부이다. 방사선이 인간의 생식세포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이 유전되는가에 대해서는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에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건강실태를 조사 및 수렴하고 2005년에 발표한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 4,000명 이상의 원폭 피해자 2세를 조사했는데 약 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절반이상(52%)이 10살이 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또한 한국 원폭 피해자 2세의 질병 발병 가능성은 세대 일반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성은 일반인보다 빈혈이 88배, 심근경색·협심증이 81배, 우울증이65배나 높았다. 여성의 경우 심근경색·협심증이 89배, 우울증이71배,유방 양성종양이 64배 정도로 심각했다. 2013년에는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실태조사가시행되었다.

원폭 피해자 1세 666명 (59.2%), 2세 339명 (30.1%), 3세 120명 (10.7%)을 대상으로 시행된 결과에서 자녀 중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 여부는 응답자의 5명 중 1명인 20.2% (161명)가 '있다'라고응답하였다. 1세의 경우 23.4% (12명), 2세 13.9% (34명), 3세 5.9% (1명)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률은 9.1%로 전국 평균(5.0%)의 2배에 가까웠다. 위의 실태조사에 있어서방법상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원폭 피해자의 후손에서 질병발생의 빈도가 높고 유전성 질환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발생한 질병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원폭 피해자 2세, 3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사선영향연구소(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RERF) 는 1940년 후반부터 진행된 연구 조사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실시 한 그 어떤 조사에서도 방사선 피폭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극구 부 인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전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로부터 발생한 여러 사건은 원폭 피해의 유전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2) 국내·외 원폭 피해 후유증 관련 조사 및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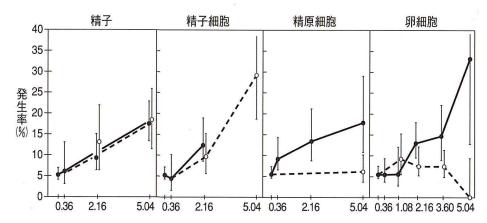
RERF는 미국이 방사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원폭피해자위 원회(Atomic Bomb Casualty Committee; ABCC)를 전신으로 하는 일본 소재 연구기관으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8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2년에 1번 조사, 2세에 대한 추적 조사 및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60년 역학 조사 결과 2세에 대한 원폭 피해 후유증의 유전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본의 후생노동부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RERF의 역학 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다양한 연구 결과로부터 원폭 피해 후유증의 유전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앨리스 스튜어트는 1970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에서 임신 중에 산부인과 진단용 엑스선에 노출 시 자녀의 소아암 발생률이 40%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RERF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는 자궁 내 피폭으로 인한 암 등의 증가는 없었으며, 특히 백혈병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 결과를 부정하였고, 그렇다 보니 방사선이 사람의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처럼 증명되지 못했다.

노무라 타이세이 (野村大成) 오사카대학 명예교수는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이 다음 세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저명한 과학자이다. 그는 특히 40여 년에 걸친 쥐 실험의 결과, 부모가 방사

도표. 부모 쥐에게 X선 조사에 따른 자녀(F,)에서의 종양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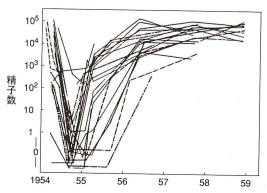
出典: Nomura, T. Parental exposure to X rays and chemicals induces heritable tumours and anomalies in mice. Nature, 296: 575-577, 1982.

선에 피폭되면 그 자녀와 후손에게 돌연변이뿐 아니라 암이나 기형까 지도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방사선 피폭 정보에 비례하여 자녀의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는 '오사카 리포트'로 불리며 국제적인 과학저널인 네이 처(Nature, 1982)에도 게재되어 유럽과 미국 등 해외 각국에 큰 반향 을 일으킨 바 있으며, 그 이전까지 UN과학위원회가 정했던 방사선의 유전 리스크 추정을 백지화시켰다. 방대한 수의 포유동물(생쥐)를 이 용한 영미(英美)의 연구에서는, 다음 세대에서의 돌연변이가 피폭선량 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메가마우스 실험). 오 사카 리포트에서는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는 '암, 기형, 유산, 사산'도 다음 세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다 시 말해서, 태아가 직접 피폭되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피폭으로 인하 여 2세에서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암과 유전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 1975년, 노무라 교수의 연구 결과는 영국에서 근대유전학의 어 머니로 불리는 라이온 박사의 추가시험(쥐의 종류만 바꾸어 같은 방 법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한편, 구마토리 도시요키는 비키니섬 수폭실험 당시에 피폭된 제5후

쿠류마루(第五福龍丸)호의 승무원의 정자 수를 측정한 데이터를 제시 하였다. 피폭 직후의 정자 수는 정상이지만, 3개월 이내에 거의 0에

도표. 비키니섬 피폭자의 정자 수 (마이크로리터)



出典: Kumatori, T., Ishihara, T., Hirashima, K., Sugiyama, H., Ishii, S., and Miyoshi, K. Follow-up studies over a 25-year period on the Japanese fishermen exposed to radioactive fallout in 1954. In: The Medical Basis for Radiation Accident Preparedness (Eds. Hübner, K. F. and Fry, S. A.), pp. 33-54, Elsevier/North-Holland, New York, 1980.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다가 곧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피폭 직후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정자가 완성되어 있으면 이른바 DNA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이미 죽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정자의 기원이 되는 정원세포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것이 상해를 입으면 감수분열하는 동안에 죽어 버린

다. 정자가 될 정원세포가 죽어 버려 2~3개월이 지나서야 정자 수가 거의 소멸된 것이다. 이는 방사선으로 인해 생식세포가 완전히 파괴 된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무라 교수의 연구는 가드너의 조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방사선 피폭이 후손에게 미치는 유전적 피해의 위험이 다시 확인되었다. 마틴가드너는 1990년, 영국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남성 종업원자녀의 백혈병 발병률이 평균보다 6~8배 높다는 연구 결과로 세상을놀라게 했다. 원폭에 비해 선량이 낮고, 100mSv이상 피폭된 경우에상대 위험율로서 6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정자 및 정원세포가 비교적 감수성이 높은 시기에는 이런 적은 양으로도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드너의 보고에 대해서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데이터를 내세운 반론이 제기되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는 2세의 암·백혈병 증가는 근소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정원세포

단계의 피폭으로, 피폭 직후에 임신한 사람이 적었을 것이므로 피폭시기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셀라필드의 핵시설 주변은 장기간 지속된 방사선 누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상당했고, 플루토늄뿐아니라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도 있어 생후 환경의 영향, 즉, 출생 후 피폭량도 매우 컸던 반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경우에는 원폭 폭발후 방사능의 '검은 비'가 내렸지만, 원폭에 피폭된 뒤 태어난 자녀의내부·외부 피폭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잘못된 것이다.

도표, 부모 피폭 유형별 백혈병 증례 수



2012년에는 백혈병의 유전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카마다 나나오(鎌田七男) 히로시마 대학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한 일본 연구진은 '히로시마 앤복 피폭자 자녀의 백혈병 발생에 관하여'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원폭 2세의 백혈병 유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연구진은 1946~1955 년 사이에 태어난 2세 중에서 35세가 되기 전에 백혈병에 걸린 49명을 분석한 결과, 부모 양쪽 모두가 피폭된 자녀의 수가 26명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버지만 피폭된 경우(6명)와 어머니만 피폭된 경우(17명)보다 훨씬 많은 수로, 방사선 피폭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부모가 방사선 피폭자일 때 자녀가 암, 백혈병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유산, 사산할 확률 등이 높다"고 강조했다.

원폭피해자 전문치료병원인 히로시마 공립병원 마루야 히로시마 명 예원장처럼 의료현장에서 피폭자들을 치료했던 수많은 의사들도 방사 선 피폭의 유전적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35년간 피폭자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형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RERF가 유산된 태아의 샘플을 모아 조사했는데 비피폭자의 경우 기형아 비율이 25%인데 비해 원폭 2세에서 태어난 3세는 기형아 비율이 46%에 이르렀다"며, 기형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숨기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 나카지마 마사히로(中島 正洋)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전성을 부인하면서도 원폭 피해자의 발암 위험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며, "유전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향후 20~30년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폭 피해의 유전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은 실정이나,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들은 실험적,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부모의 피폭이 유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다. RFRF의 연구 결과의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폭 피해의 유전성이 없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또한 발전된 과학의료기술은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학술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실태조사와 원폭 피해 유전 여부 검증의 필요성

원폭 피해의 유전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을 뿐 원폭 피해 후유증의 유전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사안이며, 피폭자의 삶과 현실 속에서도 반영되어 2, 3세들이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원폭의 영향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두려움으로 출산 및 자녀의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유전에 대한 가중된 불안감과 함께 원폭피해자로서의 차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유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피폭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불이 익은 그들이 피폭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정책 진행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피폭자원호법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도 원폭 2세에 대한 지원법이 없으며 부모의 피폭과 2세의 질환 사이의 인과 관계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원폭피해자 1세대뿐 아니라 2, 3세 등의 후손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 국가적인 제도나법은 원폭투하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실정이지만, 지방 조례로서는 지난해 12월 22일 경상남도 원폭피해자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1세대와 그 후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을 지방정부가 시행한 바 있다.

해방 이후 정부는 줄곧 국내 원폭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며, 여전히 긴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중증질환을 앓는 원폭 피해자 후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원폭피해자후손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원폭 피해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유전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 기존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성 분석 및 조사는 미진하여 기초적인 수준으로만 진행되었으므로, 의료진과 함께 원폭 관련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 유전학적인 피해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 2세·3세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 세대가 받았던 차별과 불이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에 나서며

우리는 일제의 수탈과 강제징용 그리고 원폭 피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마

중물로써 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자 나섰다. 한반 도에서 온몸으로 핵의 잔혹성을 증명하고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에 있어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 1세의 인원은 2,200여명(원폭피해자협회 등록 인원 기준)으로, 피폭 1세의 90% 이상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다. 게다가 피폭 1세의 평균 연령은 84세로,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고 건강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실태조사는 하루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 원폭피해자에게서 피폭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술 채록 및 증언의 녹취 등이 필요하나, 인력, 비용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채록 자료는 원폭 피해가 유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구술 채록을 자세히 진행함으로써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입증할 데이터가 축적되면 원폭으로 인한 DNA 손상 및 돌연변이 등이 어떤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원폭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구술 채록은 압축적이고 중요한설문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의 기록이다. 피폭 2, 3세의 유전적 대물림이 규명된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그리고 가해 책임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수 단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관련 자료

1. 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평가회의 관련 자료

* 2015년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한국 원폭피해자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평가회의를 계기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당시 발표되었던 발표문들만 발언요지들을 소개한다.

(1)핵확산금지조약(NPT)9차재검토회의대응활동(1) 중에서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처음으로 유엔에서 제기

유엔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가 열릴 때마다 일본인 피폭자 ('히바쿠샤')들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 인류 역사 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일본이자 희생자가 무려 74만 명에 이르니 그럴 만도 하다. 이 회의에 일본은 매번 지자체의 지원 하에 피폭자를 중심으로 1~2천 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참가시켜 왔다. 이에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회의의 엔지오 행사는 연설, 집회, 행진등 대부분의 행사들이 일본인 피폭자들을 위주로 진행된다. 이제 '히바쿠샤'는 피폭자를 뜻하는 세계어가 되었다. 전범국이자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속성이 가려지고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셈이다.

반면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그 수가 무려 7~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강제 징용된 2중, 3중의 피해자들인데도 지금까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명을 받은 일이 없었다. 2005년 제7차 재검토회의에 한국인 피폭자 곽귀훈 씨가 참가한 적이 있지만 일본 피폭자 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사이드 이벤트에서의 발언 등으로 활동이 국한되었다.

이번 NPT 재검토회의에도 1,500여 명에 이르는 일본인 참가자들은 '국제 원폭 피폭자 워크숍' 개최 등 유엔 안팎의 주요 행사들을 주도했다. 그러나 일본인 피폭자들의 발언은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이 피폭의 참상을 부각시키는데 머물러 행사를 진부하게 만들었다. 이에비해 한국인 피폭자들은 단 2명이 참가했지만 각종 주요 행사에서사안의 정곡을 찌르는 발언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주최 측과 참가자들을 긴장시키며 회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2015. 5. 1 유엔본부 트러스트쉽 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시민사회 발표장. 심진 태 지부장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제기했고, 평통사 청년대표 김한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오바마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질타했다.

4월 25일,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사전대회로 "핵 없는 세계, 평화, 정의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요구하는 평화와 지구에 관한 국제 엔지오 대회" 두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세션은 유엔과 정부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심진태 지부장과 김봉대 고문이첫 번째로 연설하였다. 원래 계획은 세션의 마지막 순서에서 연설하는 것이었는데, 당일 아침 전격적으로 첫 번째 연사로 배정된 것이다. 피폭자들의 연설을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유엔과 정부 인사들의성의와 책임 있는 발언을 유도하려는 주최 측의 의도(?)로 추정되었다.

연설에서 심진태 지부장과 김봉대 고문은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한 미일 정부의 사죄와 배상,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 규탄, 피폭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하여 일순간 400여 명의회의 참가자들을 긴장시켰다. 다른 연설자들의 조용(?)한 발언-연설이라기보다는 과 선명히 대비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주최 측의 한 사람인 조셉 거슨에게 소감을 묻자 "힘이 있었다. 정부 등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라고 밝혔다.

NGO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대 정부 프리젠테이션(5월 1일)에서도 심진태 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미일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자리는 NPT 당사국 정부 대표자들을 상대로 각국에서 온 NGO 대표들이 연설하는 자리다. 심 지부장은 한국인 생존 피폭자 중 한국원폭피해협회에 등록된 2,650명의 평균 나이가 81세라고 소개하며, 미일 정부를 향해 "우리가 모두 죽기만을 기다리는가?"라고 일갈하며 피폭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인 피폭자들은 히로시마 등의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된, 일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피해자인데도일본 정부는 치료비 지원 등에서 일본인 피폭자들과 차별대우를 하고있다고 분노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심진태 지부장과 김봉대 고문은 수차례의 NGO 행사에 참석하여 과거의 회상과 위안을 위한 국제연대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실천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연설에서 "70년 동안 우리는 피폭의 참상을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피폭자들이 힘을 합쳐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자. 전범국으로서의 일본 정부도 미국 정부와 같은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폭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세계 평화의 상징 유엔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시켜야 한다. 한미일 정부는 원폭 피해의유전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폭 2세 환우회원 1300여 명이 원폭 피

해 유전의 살아있는 증거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자. 핵무기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33개국 피폭자 연대를 만들어 미일 정부와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피폭자 지원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도 이끌어내자"고 힘주어 연설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처음 참가한 유엔 국제회의에서 원폭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죄적 책임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그 동안 일본인 피폭자나 피폭단체들은 일본이 전범국이라는 사실 때문 에 미국의 원죄적 책임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심진태 지부장과 김봉대 고문은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 미국 정부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핵확 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 참가한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런 기회를 만들 어 준 평통사가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2) '9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대정부 시민사회 발표'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문제를 제기한 심진태 지부장의 발표문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원폭피해자 심진태다. 1943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피폭을 당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히 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전체 피폭자 74만 명 중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피폭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이었다. 나의 아버지도 히로시마 군사기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4만 3천여 명이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원폭 후유증으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폭자들은 2,650여 명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원호법 적용을 배제했고 차별했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일일이 개별 소송을 해야 했다. 지금도 일본은 일본인 피폭자들에겐 치료비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인 피폭자들에게는 의료비 상한제를 두어차별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미국은 엄청난 피해 결과를 예상하고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인들을 비롯한 33개국의 수십만



2015.4.25 NGO 사전대회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연설하는 심 진태 지부장, 김봉대 어르신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원죄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81세다. 우리가 다 죽기만을 기다리는가?

더욱 큰 문제는 원폭 피해가 유전된다는 점이다. 2013년 경상남도 가 원폭 피해 1세대, 2세대, 3세대 1,125명을 조사했다. 전체 답변자

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의 원폭 2세 환자 1,300여 명은 핵무기의 인도적 피해가 영구적이며 대물림된다는 것을 존재로서 증명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원폭 2세, 3세들 등 후세의 원폭유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들은 미국이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외면해 왔다. 그래서 우리 원폭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후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추모공원을 만들고 싶다.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인류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원폭피해자들의 참상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유엔은 반인도적 핵무기를 불법화하고 폐기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3) 5.4 사이드 이벤트 심진태 지부장 발언 요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내가 사는 합천에만 약 660의 원폭피해자가 있다. 합천을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한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에는 왜 피폭자들이 피폭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나는 원폭 투하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핵무기 사용을 왜 금지해야 하는지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진정한 평화공원을 합천에 만들고 싶다.

여기 와서 보니, 원폭 피해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없고, 70년 전 핵무기 피해의 참상만 증언하고 있었다. 이미 핵무기 피해의 참상은 말할 만큼 말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일본 정부는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해국이라고 한다. 33개 국가의 국민들이 일본에 있다가 피폭 당했다. 전 세계 33개국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 피해자들의 연대모임을 만들자.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한국의 피폭자들만 모

여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나라들에 사는 피폭자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 정부에 핵무기 사용의 책임을 묻자. 여기 모인 피폭자들과 핵무기를 반대하는 평화애호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아 핵무기 사용을 반성하지 않는 미국 정부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

각 나라에 있는 피폭자들에게 나의 제안을 전해달라.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피폭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그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와 연결시켜 달라. 힘을 모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NPT 한국대표단, 평통사, 참여연대가 며칠 전 미국 국무부를 만났다. 핵무기 사용의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미국 국무부에서 책임자를 정하고, 한국인 피폭자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대해 '생소한 이슈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게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이 할소리냐?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할 소리냐? 이런 미국 정부를 움직이려면 더욱 큰 연대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유엔 반기문 총장도 만나려고 했다. 뉴욕에 오기 전부터 면담 요청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유엔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5.4 사이드 이벤트 김봉대 어르신(고 김형률님 아버지) 발언 요지

"잔인한 대물림, 한국인 원폭 2세를 인정해야"

나는 김봉대다. 나는 내 아내와 아들을 대신해서 인권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원폭 2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 아내는 6세에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했다. 내 아내는 피부병, 등허리 종양, 골다공증 등으로 한평생 고통을 받아 왔다. 내 아들 김 형률은 2005년에 희귀성 난치질환인 선천성 면역글로블린 결핍증으로 죽었다. 원폭 피해 유전 때문이다. 내 아들 김형률은 자신의 병이어머니의 원폭 피해 때문인 것을 알고 나서 원폭 2세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외면해 왔다. 국가가 원폭 2세들에 대해 직무유기 하였다. 내 아들은 원폭 2세들을 조직하고,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였다. 일본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참석했다. 내 아들 김형률이 시작한 특별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국회에서 보류 중이다.

그러나 한미일 정부는 원폭 피해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피폭자 2세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일본에 세운 미일 방사선 영향연구소(RERF)는 원폭 2세들의 건강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원폭 2세들의 병이 피폭 때문인지 아닌지



유엔본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봉 대 어르신

세들의 병이 피폭 때문인지 아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2007년 발표했다, 방사선영향연구소는 부모의 방사선 피폭의 유전과 관련하여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방사선영향연구소의 이 연구원은 피폭의 유전에 관해 인정한다고 개인적 입장으로 밝힌 적 있다. 일본과 미국 정부가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5) 5.4 사이드 이벤트 최봉태 변호사 발언 요지

"원폭 피해자에게 정의를"

원폭피해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는 히로시마 나가시키에 대한 원폭투하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 폭격이며 독가스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는 위법한 전범 행위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8.30. 결정을 통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위 같은 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으로 판단된 후 한국 정부는일본 정부와 당국자간 교섭을 진행 하는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일본정부와 같은 교섭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현재 생긴 상황이라고할 수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07.4.27. 판결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처리된 전쟁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실체법적으로 불소멸하였다고 판단해 원폭피해자들의 청구권처리가 향후 과제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서 보면 이 역시 일본 헌법위반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및 일본의 원폭피해자에게 정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양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 중심의 핵 질서를 유지 강화시켜 현재와 같은 무법천지를 초래하고 있다. 원폭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지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비핵화 논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원폭을 투하하게 된 경위, 원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특히 유전성에 대한 역학 조사, 원폭투하 사망자 수, 원폭 생존 피해자의 후유증, 원폭제조 및 사용 등. 또한 이득을 본 기업조사도 필요한데,

우선 관련 자료들의 공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원폭투하가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 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나 핵무기제조 책임기업 이 그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정의를 회복시킬 방법은 없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론화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행동으로 사죄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하다. 즉, 핵무기의 점진적 감축과 완전한 폐지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사죄 조치인 것이다. 인간의 숭고한 정신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 강하며, 원폭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길에 힘을 합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

2. 2005년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제정요청 기자회견문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요청합니다.

한국 원폭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 촉구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 청원 기자회견(2005년 4월 12일)
- 1. 일본제국주의의 광기 어린 침략과 가공할 착취가 막을 내린 지도 어언 60년,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60년 전 역사가 남긴 고통의 굴레와 소외의 방벽에 갇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이어 투하된 원자폭탄은 대량인명살상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인류 역사

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결코 씻기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일제의 강제연행에 의한 인간수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뜻하지 않은 원폭피폭의 상흔을 입은 것도 모자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방치된 채 살아온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지원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지금도 '대를 이어'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 2. 지난 200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003년 8월한 원폭2세 환후가 원폭2세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이후, 정책 권고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에 공식 발표한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질병이환상태를 살펴본 결과, 원폭피해자 1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이 93배, 암이 70배, 빈혈 52배, 정신분열증은 36배의 격차를 보여 이들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폭피해자 2세의경우 조사대상자 중 7.3%가 이미 사망하였고, 사망연령은 10세미만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원인으로는 원인불명이거나미상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원폭피해자 2세는일반인에 비해 빈혈 88배, 심근경색 협심증 81배, 우울증 65배, 천식 26배, 정신분열증 23배 등으로 원폭 1세와 마찬가지로 질병발생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이와 같이, 원폭피해자들은 현재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정책 권고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원폭에 의한 유전문제가 규명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은 현재로서

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 고 있어, 일본 후생성의 입 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원폭피해자들 은 고령이며, 갖은 병고와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원폭으로 인한 직·간접적 인 피해가 대를 이어 끊임없 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한국 정부는 문제 의 심각성과 시급성 차원에 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지원 대 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난 60년 동안 외면해 온 한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 정부가 원폭피해자문제를 폭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헌신한 고 김형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의 방기이며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4. 지난 1월 20일에 공개된 정부 문서인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74」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74년 당시 한국 정부가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1세를 9,362명으로 공식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공개하지 않은 원폭피해자 1세까지 추정하면 약 2만여 명, 그리고 원폭피해자 2세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이

병은 유전성이 있어 피폭자들의 후손에 대한 건강관리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 피폭자(1세, 2세)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이 시급하나 일본에 파견 치료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에 이들을(원폭피해자 1세, 2세) 위한 현대적 치료센터 및 재활원 설립이 요망된다'라고 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세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400병상 규모의 국립원폭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5. 1974년 당시 보건사회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세들이 시급하게 '의료원호'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인 피폭자의 대부분이 장기요양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로 생계비 부담 능력이 없어 이들에 대한 자활의 길을 터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이후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 등 제반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채 갖가지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으며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일뿐더러, 원폭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대책 방침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정책인지를이번에 공개된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6.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반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원폭피해자를 상대로 한 국가권력의 횡포일뿐더러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가 제외되었음이 공식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작업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일본 측에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이상, 원폭피

해자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의 인권보장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제반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청원을 시작으로, 원폭피해자들과 후손들의 훼손된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3.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 공동기 자회견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입장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년은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온 선열들의 고귀한 뜻과 가르침이 우리 민족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지남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청산과 문제 해결이 아직도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국은 여전히 사죄와 반성을 미룬 채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부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과 피폭이라 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잊힌 존재로 살아왔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10만여 명이 피폭당하여 5만여 명이 그 처참한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로 뒤덮인 검은 비를 맞으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커녕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선행하라. 실태조사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미일 정부의 책임을 인 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피폭 74년이 다 된 지금까지 한국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역학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는 2,350명(2018년 12월 기준)만 남아 있다. 식민지배와 침략, 핵의 참상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4세다. 몇 년 후면 피폭의 산증거가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부모가 피폭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일반인보다 3.4~89배의 발병률을 가지고 각종 질환을 앓으며 병마 속에 살아온 피폭 2세 등 후손들은 질환의 원인을 모른 채 피폭영향의 인과관계를 규명 받지 못하고 있다. 원폭피해자 1세들과 2, 3세 등 후손들은 건강, 생활실태조사는 물론 의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병빈도와 질환의 원인, 피폭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규명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 제정된 원폭피해자특별법에는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원폭피해 후손들이 원폭피해자 정의

와 대상에서 누락되어 조사 규명과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원폭피해자 2, 3세 등 후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루속 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원폭 투하로 억울하게 희생된 5만여 명의 영령들은 아직도 고 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위령각을 건립하여 유골과 영령을 하루 속히 모셔야 한다. 핵의 참상을 후세에 알려 두 번 다시 인류사에 이 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핵평화공원을 조성(원폭희생 자 추모비, 위령각, 자료관, 평화교육관)하여 평화교육에 힘써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

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 고,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둘째, 3.1운동 100주년 대 통령 기념사에서 한국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을 밝혀라. 한국원폭피 해자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 공동



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심진태 지부장

들이다. 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 고통을 겪었지만 일 본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징용과 원폭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 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 원폭피해를 위 한 '원호법'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차별해왔다. 한국원폭피해자들 과 그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증인이다.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없이는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이에 3.1운동 100년 기념사에서 반드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밝혀 야 하다.

셋째, 올해는 원폭피해자들이 희생된 74주기가 되는 해이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서 8월 6일 거행되는 74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과 추모사를 간절히 요청한다. 한국원 폭피해자의 고통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 미국의 원폭투하에서 비 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일본과 미국 정부의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총리를 비롯한 수만의 인파가 참여하여 국가적으로 매년 희생자들을 추도하면서 세계 유일의 핵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 지만 한국은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지금껏 대통 령이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아 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가와 정부가 그동안 방기했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협정에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문 재인 대통령이 합천의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꼭 참석해야 한다. 이는 미, 일 정부의 피폭과 관련한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이 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의 조치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피폭자와 그 후손들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고통을 기록하고 알리며 같이하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원폭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홍보 연구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2차 북미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정세의 진전에 발 맞춰 남북 피폭자들의 교류를 이끌어 내고, 미, 일 정부의 원폭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인류는 물론 모든 존재에 가공할 영향을 미치는 핵무기 피해는 당대를 넘어 후손들에게까지 심각한 유전적 영향을 미친다. 원폭

피해자인 한국, 일본 등의 핵 피해자들이 그 산 증거이다. 핵무기 피

해자로서 한 많은 일생을 살아 오고 대를 이어 그 후유증으로 대물림을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 들의 절절한 호소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구상에 핵무 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가 대를 이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아픔을 덜어 주는 것이 한반도에 비핵평화를 이루어내는 첫걸음이다. 평화는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다. 비핵평화는 이제 되돌아갈 ^(출처 : 뉴시스)



다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정부에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공생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통한 평화와 번영, 통일된 세상 만들 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9(피폭 74주기). 2. 21

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후손회, 합천평화의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일반핵평화연대, 김형률추모사업회 뜻에 동의하여 연명한 단체와 개인

6. 참고 문헌, 사이트

- 1) 한겨레, 「강제징용 역사는 한반도 전체의 고통이었다」, 2018.10.30.
- 2) 국가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국민 징용령」
- 3) 김인선, 「미국의 전후 구상 속에서의 원폭투하 결정」, 1998. 2
- 4) 하워드 진, 조선혜 역 「미국민중저항사미」(일월서각), 1986
- 5) 김인선, 「미국의 전후 구상 속에서의 원폭투하 결정」중 Barton Bernstein, [Atomic Bomb Reconsidered]
- 6) 김인선, 「미국의 전후 구상 속에서의 원폭투하 결정」중 In the matter of Robert Oppenheimer: Transcript of Hearing before Personnel Security Board
- 7) 김인선, 「미국의 전후 구상 속에서의 원폭투하 결정」중 H. Truman. "Potsdam Diary" 1945. 7. 17
- 8) 김인선, 「미국의 전후 구상 속에서의 원폭투하 결정」중 P. M. S. Blackett, "A Check to the Soviet Union", in The Atomic Bomb
- 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2013.
- 10) "원폭 피폭 후유증 '대물림' 첫 인정", 한겨레신문, 2017년 1월 17일.
- 11) "방사능 유전 영향, 동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 미디어오늘, 2011월 3월 20일.
-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폭탄피해자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안 및 예비조사」 일본의 원폭피해자 조사 및 지원제도 현황, 2018.
- 13) "방사선 피폭 40여년 연구 노무라 교수 6일 방한 강연", 오마이뉴스, 2012년 8월 13일.
- 14) "대물림되는 핵폭탄의 비극···'한국인 피폭 2세 7500명'", 프레시안, 2013년 3월 18일.
- 15) <원폭 67주년 특별초청 강연회>, 노무라 타이세이,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 16) "[비극의 현대사 원폭의 진실] 3 방사선 피폭, 유전된다는 증거 없다", 부산일보, 2012년 8월 20일.
- 17) 김기진 외 7명,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아십니까? 4화 원폭 70년, 유전성 논 란은 여전히 '진행형', 2015.

- 18)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4년
- 19) 장성환,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7
- 20) 박성실, 「한국원폭피해자의 사회적 고통, 그 구성과 대물림」,성공회대 석사 논문. 2015
- 2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강제동원이란?], 20119.3.26
- 22) 2010.5.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Delegitimizing Nuclear Weapons: Examining the validity of nuclear deterrence
- 23) 김형률 저, 아오야기 준이치 편, 『나는 반핵인권에 목숨을 걸었다』,행복한 책읽기, 2015